

외국인 교환학생 관한규정

개정 2021.01.22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의 외국인 교환학생에 관한 학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‘외국인 교환학생’(이하 ‘교환학생’이라 한다)이라 함은 외국 자매학교와 협정에 의거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입학)

- ① 교환학생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충족되는 자를 선발할 수 있다.
1. 자매대학과의 협약에 해당하는 자
 2. 총장의 입학허가를 취득한 자

제4조(학사) 교환학생은 ‘학칙’ 및 ‘학칙시행세칙’에 따른다.

제5조(장학) 필요시 총장은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기숙사) 교환학생은 반드시 수학기간 동안 본교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것을 권장 한다.<개정 2021.01.22.>

제9조(사전교육) 학교시설 이용과 교내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해 별도의 안내교육을 실시하고, 국내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.

제10조(교환학생의 권리와 의무) 교환학생은 학칙과 제 규정에 따라 본 교 재학생 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제11조(학생보험) 교환학생이 교내에서 각종 상해 사고 시 학교가 정한 상해 보험 약관(학생팀)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.<개정 2021.01.22.>

제12조(준수사항)

- ① 교환학생은 본교에서 수학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1. 본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.
 2. 교환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목적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.
 3. 소정의 유학기간이 종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국으로 귀국한다.
 4. 국내 체류기간 및 출입국에 발생하는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

임이 본인에게 있다.

5.본교에 수학기간 동안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본교 상벌규정에 따르며, 조기 귀국시킬 수 있다.

제13조(변동신고)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의거 외국인학생의 변동사실을 인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다.

제14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01.2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